

◆ D-23 휴일, 연·월차휴가의 반납 또는 의무사용

1. 불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일, 휴가를 반납,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단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휴일, 휴가의 휴식권을 반납,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휴일, 휴가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체제도가 허용됨. (건설회사의 경우 구정, 추석 전후일, 샌드위치휴일에 사전합의에 의하여 연·월차대체제도 활용할 수 있음)
3. 연·월차휴가를 회사측이 사용토록 적극권장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의 입장은 회사측이 수차에 걸쳐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제공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를 무효화시키고 이전과 같이 사업주의 사용권장유무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라는 입장임.
4. 실무선에서는 반드시 “연·월차사용계획서”를 연도초에 제출하고 해당일에 사용토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반일휴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계휴가나 동절기휴가, 명절전후일, 샌드위치휴일에 대하여 연·월차를 대체사용토록 근로자대표와 사전서면합의를 체결 할 필요가 있음.